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8
----------	------

제출년월일 : 2005. 11.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새마을장학금의 지급 및 정지사유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과 일부 부적합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문의 내용 일부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절한 용어로 변경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및 제6조)
- 나. 장학금의 지급에 따른 자격기준 및 장학금의 지급 정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 함 (안 제9조제1항)
- 다. 장학생의 의무를 장학생으로서의 본분에 맞게 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 나. 기 타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역새마을지도자”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 지도자”로 한다.

제2조중 “특기장학생으로 구분된다”를 “특기자장학금으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자를” “학생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종로구협의회장(이하 “협의 회장”이라 한다)·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부녀회장”이라 한다)·새마을 문고 종로구지부회장(이하 “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종로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의 제목중 “종로구 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를 “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구청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며”를 “구 소속 소관업무 담당직원이 되며”로, “처리하며”를 “처리하고”로 하고, 동조제6항중 “필요에 따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7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정, 관리 등을 위하여 구에 새마을장학생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 중 연장자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 구 소속 소관

업무 담당과장 및 기타 덕망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제6조중 “구당 새마을 지역지도자 수”를 “지도자 수”로 하고, “범위내”를 “범위 안”으로 한다.

제8조중 “구지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구지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1. 보호자인 새마을 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둔 때
3.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 <u>서울특별시종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u> ”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u>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새마을지도자</u> (새마을 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 <u>장학금</u>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u>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u>특기장학생으로 구분된다.</u>	제2조(장학금의 종류) ----- <u>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u>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여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u>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u> ----- <u>학생을</u> ----- 1.~3. (헌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u>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종로구협의회</u> (이하 “ <u>구협의 회장</u> ”이라 한다)· <u>종로구새마을부녀회장</u> (이하 “ <u>구부녀회장</u> ”이라 한다)· <u>새마을문고종로구지부회장</u> (이하 “ <u>구문고지부회장</u> ”이라 한다)· <u>새마을금고협의회장</u> (이하 “ <u>금고협의회장</u> ”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u>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종로구지회장</u> (이하 “ <u>구지회장</u>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추천) ----- <삭제> ----- 협의회장 ----- 부녀회장 ----- 문고지부회장 ----- <삭제> ----- 종로구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
제5조(종로구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 설치 및 장학생 선정)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정, 장학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지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종로구새마을장학생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새마을장학생 선정위원회 -----) ① ----- 관리 등을 위하여 구에 새마을장학생 선정위원회 -----
②(생략)	②(헌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구지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문고지부회장 중 연장자로 하고, 위원은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문고지부회장, 구청 주무과장, 기타 덕망이 있는 자로 한다.	③ ----- 회장 -----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 중 연장자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 구 소속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기타 덕망 있는 -----

현행	개정안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구 지회 사무국장이, 서기는 <u>구청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하며</u> ,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u>처리하며</u> ,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⑤----- ----- <u>구 소속 소관업무 담당직원이 되며</u> , ----- ----- <u>처리하고</u> , ----- -----.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u>필요에 따라</u>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u>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경우</u> ----- -----.
⑦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u>구청</u> <u>장</u> 에게 통보한다.	⑦----- ----- <u>서울특별시</u> <u>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1. <u>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u>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1. <삭제> ----- -----
2.~4. (생략)	2.~4. (현행과 같음)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u>구당 새마을 지역지도자수</u> 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u>범위내</u> 에서 정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 <u>지도자</u> <u>수</u> ----- ----- <u>범위안</u>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u>구지회장</u> 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 ----- <u>회장</u> ----- ----- -----.

현행	개정안
제9조(지급 및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 <u>각호의 어느 하나</u> ----- -----.
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u>주민으로</u> 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1. ----- <u>자격을 상실</u> 하여 그만둔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삭 제》
3. <u>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u>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u>장학생이</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u> 한 때	《삭 제》
② <u>구지회장은</u>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② <u>회장</u> ----- -----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u>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u> 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 ----- <u>《삭</u> ----- ----- <u>제》</u> 한다.